4대궁 및 종묘관리소 자체종합감사 결과보고

궁능유적본부의 4대궁 및 종묘관리소는 「문화재청 감사 규정」 제2조에 따라 3년 주기로 실시하는 자체종합감사 대상기관임.

□ 개 요

○ 대상기관 : **4대궁 및 종묘관리소**

○ 감사기간 : 2022. 6. 13. ~ 7. 22. / 기간 중 25일간(본 감사)

○ 감 사 자 : 법무감사담당관실 기술서기관 고정주 등 3명

○ 감사범위 : 이전 자체종합감사 실시 이후 처리한 업무 전반

□ 감사결과

○ **주요 지적사항** : 문화재수리 이력, 관람객 유실물 관리, 초과근무수당 지급, 복무관리, 국유재산 및 시설관리, 방재시스템(CCTV 등) 관리, 특근매식비, 재현용품관리, 홈페이지 관리 등

○ **처분요구** : **46건**(경복궁 7건, 창덕궁 10건, 덕수궁 11건, 창경궁 9건, 종묘 8건, 복원정비과 1건)

○ **세부내역** : 환수 6,043천 원, 주의 9명, 경고 2명, 모범사례 2건 등

(단위: 건, 명, 천 원)

합계			징계 (인원)	시정 (금액)	경고 (인원)	주의 (인원)	개선	권고	통보			고발 (인원)	현지 조치
건수	금액	인원							일반	시정 완료 (금액)	모범 사례 (인원)		
46	6,043	11	-	14 (6,043)	1 (2)	12 (9)	-	4	13	-	2 (0)	-	-

□ 향후 계획

○ 처분요구서 통보 및 시정 등 모니터링 점검 : 2022. 9월 이후

4대궁 및 종묘관리소 지적 및 처분조치 내용

<table>
<tr><th>연번</th><th>처분종류</th><th>지적 및 처분내용</th><th>해당기관</th></tr>
<tr><td>1</td><td>시정</td><td>□ 문화재수리 이력관리 미흡
○ 문화재에 대한 보수정비 공사 시 문화재 전자행정시스템에 보수정비 이력을 등재하여야 하나,
①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 26건 모두 보수이력 미등재
②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 48건 모두 보수이력 미등재
③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 17건 모두 보수이력 미등재
④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 38건 모두 보수이력 미등재
⑤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 25건 모두 보수이력 미등재
<처분내용>
○ 문화재전자행정시스템에 등재하지 않은 문화재 보수정비 이력 등재(공통사항)</td><td>경복궁
창덕궁
덕수궁
창경궁
종묘</td></tr>
<tr><td>2</td><td>통보</td><td>□ 유실물 관리 미흡
① 관람객의 유실물에 대하여 구체적인 처리 기준 없이 자체 관리대장을 만들어 기록 관리하고 있으나
- 대장에는 습득자, 인계자 및 서명 항목도 없고
- 2022년 유실물 신용카드 51건 등 104건이며, 2차 분실 예방을 위해 금고 또는 시건 장치가 있는 캐비닛 등에 관리되어야 함에도 책상 아래에 관리하고 있음
② 유실물 습득 시 「창덕궁관리소 유실물 처리수칙 / ‘19.2.11.시행」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나 2020년과 2022년은 ‘습득물 처리대장’을 작성하지 않았고, 잔여수량이 일치하지 않음
<table>
<tr><th rowspan="2">구 분</th><th colspan="2">습득물 처리 대장</th><th rowspan="2">방호실 금고 보관 습득물</th><th rowspan="2">확인불가 습득물</th><th rowspan="2">비고</th></tr>
<tr><th>습득물</th><th>인계</th></tr>
<tr><td>2019년</td><td>27</td><td>4</td><td>0</td><td>23</td><td rowspan="4">인계자 서명 등이 없음</td></tr>
<tr><td>2020년</td><td>-</td><td>-</td><td>-</td><td>-</td></tr>
<tr><td>2021년</td><td>122</td><td>83</td><td>6</td><td></td></tr>
<tr><td>2022년</td><td>-</td><td>-</td><td>10</td><td>-</td></tr>
</table>
③ 유실물 처리기준 없이 자체적으로 관리대장을 만들어 기록하고 있으나 구체적이지 않고, 2022년은 신용카드 등 10건을 방호실 내 책상 서랍에 관리하고 있음
④ 유실물 처리기준 없이 자체적으로 관리대장을 만들어 기록하고 있으나 구체적이지 않고, 2022년은 신용카드 54건 등 92건은 투명 보관함에 관리하고 있음</td><td>경복궁
창덕궁
덕수궁
창경궁</td></tr>
</table>

연번	처분 종류	지적 및 처분내용	해당 기관
		⑤ 관람객의 유실물을 **정문 경비실 책상 서랍에 보관·관리**하고 있으나 - 유실물 처리기준 및 관리대장도 없어 언제, 누가, 어디서 습득하였는지 알 수 없음 * 현재 유실물은 11건(신용카드 1건, 악세사리 9건, 무선이어폰 1건) **<처분내용>** ① 유실물 습득 시 **처리절차 기준을 마련**하고, 유실물을 **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** 필요(경복궁, 덕수궁, 청경궁, 종묘) ② 기 마련된 **「유실물 처리수칙」에 따라 관리 철저**(창덕궁)	종묘
3	**시정 (환수)**	**□ 대체휴무 부여와 초과근무수당 지급 중복 부적정** ○ 휴일에 8시간(식사시간 제외) 이상 근무한 경우, **대체휴무와 초과근무수당 둘 중 하나만 부여**하여야 하나, ① 대체휴무를 하였는데도 초과근무수당을 지급 * 최근 5년간 7건 / 6명 / 금액 : 321,490원 ② 대체휴무를 하였는데도 초과근무수당을 지급 * 최근 5년간 13건 / 9명 / 금액: 622,080원 ③ 대체휴무를 하였는데도 초과근무수당을 지급 * 최근 5년간 5건 / 5명 / 금액: 309,100원 ④ 대체휴무를 하였는데도 초과근무수당을 지급 * 최근 5년간 51건 / 12명 / 금액: 1,728,870원 ⑤ 대체휴무를 하였는데도 초과근무수당을 지급 * 최근 5년간 6건 / 5명 / 금액: 473,810원 **<처분내용>** ○ 휴일에 초과 근무를 하여 대체휴무를 사용하였음에도 초과(휴일) 근무수당을 **중복 지급한 금액(총 3,455,350원) 환수**(공통사항)	경복궁 창덕궁 덕수궁 창경궁 종묘

연번	처분 종류	지적 및 처분내용	해당 기관
4	경고/ 주의	□ **공가 관련 복무관리 미흡** ○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및 「국민건강보험법」에 따라 **공가를 승인 받은 경우, 공가일에 백신접종 또는 건강검진을 하거나 공가일이 변경되면 공가 변경신청 후 승인을 받아야 하나** ① 공가 변경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다른 날에 건강검진 받음(1명), 건강검진 대상이 아닌데도 공가를 승인받고 자체 휴무(1명), 그 결과 연가 1일(1일 연가보상비 92,080원)을 더 인정받음(2건 / 2명) **<처분내용>** - 공가일에 휴무함으로써 추가 받은 이익에 대하여 **연가보상비 환수 또는 연가 일수 조정** - 복무를 소홀히 한 **관련자 2명 '주의'** 조치	경복궁
		② 공가 변경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공가일 외의 날에 백신접종 또는 건강검진을 하고 공가일은 자체 휴무(5건 / 3명) **<처분내용>** - 복무를 소홀히 한 **관련자 1명 '주의', 2회이상 관련자 2명 '경고'** 조치	창덕궁
		③ 공가 변경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공가일 외의 날에 백신접종을 하고 공가일은 자체 휴무(1건 / 1명) **<처분내용>** - 복무를 소홀히 한 **관련자 1명 '주의'** 조치	덕수궁
		④ 공가 변경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공가일 외의 날에 백신접종을 하고 공가일은 자체 휴무(2명) **<처분내용>** - 복무를 소홀히 한 **관련자 2명 '주의'** 조치	창경궁
		⑤ 공가 변경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다른 날에 건강검진 받음(2명), 공가 승인을 받았으나 건강검진을 받지 아니하고 자체 휴무(1명) **<처분내용>** - 복무를 소홀히 한 **관련자 3명 '주의'** 조치	종묘

연번	처분 종류	지적 및 처분내용	해당 기관
5	**통보**	**□ 국유재산 대장 등 정비 미흡** ○ 국유재산을 관리하면서 국유재산법 및 부동산등기법 등에 따라 **건축물대장 및 소유권보존 등기부 등재 등 공부 관리**를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① 건축물대장에는 등재되어 있으나 등기부에 미등재 대상은 방호실동 등 4개 동이며, 건축물대장에 말소 처리된 광화문 매점이 등기부에 현존한 것으로 되어 있음 ② 현존 건축물 중 **건축물대장에 미등재된 건축물이 9동**이며,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151동 중 **67동은 등기부에는 미등재 되어 있으며,** 멸실되어 **부존재한 건축물 14동**은 현재까지 등기부에 등재되어 있으나 그 중에 **3동은 '국방부' 소유권**으로 되어 있음 ③ 등기부에는 존재하지 않은 **부존재 건축물 34동**을 **멸실신고 하지 않고** 현재까지 등재되어 있으며, 현재 관리되고 있는 건축물 38동은 **건축물대장에는 모두 등재되어 있으나, 등기부에는 9동만 등재**되어 있음 ④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으나 **등기부에 미등재된 대상은 장비창고 등 4개 동**이며, 등기부에는 등재되어 있으나 **건축물 대장에 없는 건축물이 제기고(영녕전 수복방) 등 6개 동임** <처분내용> ○ 소관 건축물 등의 국유재산에 대하여 **현황과 국유재산 대장이 일치하도록 관리** 철저(공통사항)	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종묘

연번	처분 종류	지적 및 처분내용	해당 기관
6	권고	□ **방재시스템 감시장비(CCTV 등) 개선 필요** ○ 국유재산을 화재 등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**방재시스템 및 소방시설 등을 구축 운영**하고 있으나 ① 주차장 감시용 **CCTV 10대(41만 화소)로 저화질** 및 감시사각 노출, 화재(**산불)감시용 CCTV 1대는 열영상 분석서버 고장**으로 작동하지 않고, 또한, 외곽담장 등에 설치한 **침입감지기 58set는 고장 및 오작동으로 전원차단** 되어 있음 ② **산불방지용 CCTV 3대는 열영상 분석서버 고장**으로 작동하지 않고, 또한, 외곽담장 등에 설치한 **침입감지센서 173대는 고장 및 오작동으로 전원차단** 되어 있음 ③ 산불방지용 CCTV는 **영상통합감시서버가 작동하지 않고**, 화면은 창덕궁 부용정 방향으로 고정되어 있어 산불감시 기능이 매우 제한적임 ④ 정전 및 영녕전의 화재(산불)감시용 **CCTV 2대(41만 화소)로 저화질** 및 감시사각이 있으며, 외곽담장 등에 설치한 **침입감지기 86개소는 고장 및 오작동으로 전원차단** 되어 있음 <처분내용> ○ 재난 사전예방 및 초동대응 할 수 있는 **방재설비를 구축**하고, **현장 여건에 따라 위치의 적정성 및 활용성 등 개선방안 마련** 필요(공통사항)	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종묘
7	기관 주의	□ **시설부대비 집행 부적정** ○「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」 등에 따라 시설부대비에서 피복비를 집행할 경우에는 공사감독 공무원 등 **공사현장 또는 사업장의 감독 업무를 하는 직원에게만 지급**하여야 함 ① 감독공무원이 등이 아닌 자에게도 피복을 지급하였음('19년 3명, '20년 3명, '21년 3명) ② 감독공무원이 등이 아닌 자에게도 피복을 지급하였음('19년 2명, '20년 3명, '21년 2명)	창덕궁 덕수궁

연번	처분 종류	지적 및 처분내용	해당 기관
		③ 공사감독 공무원이 등이 아닌 자에게도 피복(안전화, 패딩 등)을 지급하였음('20년 1명, '21년 3명) ④ 공사감독 공무원이 등이 아닌 자에게도 피복(안전화, 점퍼 등)을 지급하였음('19년 2명, '20년 3명) <처분내용> ○ 피복비 집행 시 공사현장 또는 사업장의 **감독업무를 담당하는 자에게만 지급**(공통사항)	창경궁 종묘
8	시정 (환수)	□ **특근매식비 지급 부적정** ○ 정규근무(09:00~18:00)를 하는 경우, 근무 개시 2시간 전에 출근하여 근무하거나 근무 종료 후 2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에게 **7,000원 한도에서 특근매식비를 지급**하여야 하나, ① 휴일 근무시 특근매식비 지급대상자에서 제외되는데도 **2시간 이상 초과근무**했다는 이유로 **특근매식비를 지급** * 2018.5월~2022.5월. 동안 102건 / 총 620,000원 과오지급 ② 출퇴근 전후 합산 **2시간 이상 초과근무**를 했다는 이유로 **특근매식비를 지급** * 2019.1.~2022.5. 동안 10건 / 총 70,000원 과오지급 ③ **2시간 미만으로 근무하였는데도 특근매식비를 지급** * 2019.1.~2022.5. 동안 10건 / 총 70,000원 과오지급 <처분내용> ○ 특근매식비 지급 제외대상자에게 부적정하게 지급된 **금액은 환수조치(총 760,000원 / 공통사항)**	창덕궁 덕수궁 창경궁
9	통보	□ **시설물 관리 부적정** ○ 덕수궁 관리면적 95,542㎡, 건축물 44동을 유지관리 및 복원정비를 하면서 관람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에도 ① '고종의 길' 동선 구간의 가설울타리에 부착한 **사진실사는 훼손이 심하고**, 선원전 영역 **발굴 시 발생된 콘크리트 등 잔해물 방치** ② 덕수초등학교 앞 **철재 출입문은 녹이 슬어있고 경고 부착물 등이 무분별하게 설치**되어 미관을 저해하고 있음 <처분내용> ○ '고종의 길' 구간 **가설울타리 부착사진 정비** 및 선원전 영역 발굴조사 시 발생된 **폐기물 처리(복원정비과)** ○ 철재 **출입문 정비 필요(덕수궁)**	복원 정비과 덕수궁

연번	처분 종류	지적 및 처분내용	해당 기관
10	통보	□ **궁중생활상 재현용품 관리 미흡** ○ 재현용품 자체점검에서 **보수가 필요하다고 결정하였으면 보수 등의 조치**를 하여야 하나, - 좌등, 병풍, 장지문그림, 주칠나전문갑 등은 2019년 15점, 2020년 14점, 2021년 18점, 2022년 18점에 대해 **매년 미보수로 인하여 훼손 가속화 우려** **<처분내용>** ○ **보수대상으로 결정한 재현용품은 보수** 실시	경복궁
11	통보	□ **홈페이지 정비 필요** ○ 국민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**홈페이지를 운영하면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**하여야 함에도 - 홈페이지의 상설전시관 배너에는 **대한제국역사관 1층 상설전시 내용이 누락**되어 있고, **'관람안내 보기'의 잘못 연결된 링크는 보완조치**가 필요 - 또한, 중명전, 숭례문, 외국어 등 전반적으로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 내용이 미흡하므로 **중장기적 개선 필요** **<처분내용>** ○ **홈페이지 정보의 정확성 및 적시성이 확보**되도록 정비 필요	덕수궁
12	시정 (환수)	□ **용역 완료 시 보험료 정산 미실시** ○ 공사공정이 포함된 용역 완료 시 **산출내역서에 반영된 보험료**를 집행하지 않거나 산출 내역보다 적게 집행한 경우에는 **정산하여야 하나** - '20년도 대한제국 황제의 궁궐 전시연출 및 전시물 제작 설치 용역은 **정산 없이 준공** - 연금보험료 및 건강보험료 **1,828천 원 부당지급** **<처분내용>** ○ "대한제국 황제의 궁궐 전시연출 및 전시물 제작 설치" 용역과 관련하여 **부당 지급한 1,828,000원을 환수 조치**	덕수궁
13	기관 주의	□ **자격요건 부적합 자와 계약체결 부적정** ○ 공사예정금액이 1천 5백만 원 이상인 전문공사를 수의계약 할 경우에는 **공사내용에 적합한 종목 면허를 소지한 업체와 계약**하여야 하나, - 7건은 전문건설업 **면허를 소지하고 있지 않거나, 공사내용과 다른 면허를 소지**하고 있음에도 계약체결 **<처분내용>** ○ 공사계약 등을 체결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당해 **자격요건에 적합한 업체와 계약 체결** 필요	덕수궁

<table>
<tr><th>연번</th><th>처분
종류</th><th>지적 및 처분내용</th><th>해당
기관</th></tr>
<tr><td>14</td><td>기관
주의</td><td>□ 일반수용비 목적 외 사용 부적정
○ 「국가재정법」 제45조(예산 목적 외 사용 금지)에 따라 세출 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는 경비를 사용할 수 없으나,
- 비데, 공기청정기, 정수기 등의 사용료는 임차료(210-07)에서 집행하여야 하는데도 일반수용비(210-01)에서 집행
- 중화전 영상 제작 등은 일반용역비(210-14)에서 집행하여야 하는데도 일반수용비(210-01)에서 집행
* 2019.1.~2022.5. 동안 12건, 131,321,110원을 일반수용비에서 목적 외로 집행
<처분내용>
○ 직원교육 등을 실시하여 관련규정에 적합하도록 예산 집행</td><td>덕수궁</td></tr>
<tr><td>15</td><td>기관
주의</td><td>□ 협상에 의한 계약 평가 업무처리 부적정
○ 추정가격이 고시금액(2.1억 원) 미만인 소규모 사업평가 시 수행실적은 평가항목에서 제외하여야 하나,
- 추정가격 1억 원 미만인 사업인데도 수행실적을 포함하여 평가
* '20년 황개 보수·교체 사업(97,000천 원), '21년 황개 보수·교체 사업(83,000천 원)
○ 정량적 평가항목을 세부기준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 동일한 업체의 수행실적 평가점수는 위원별로 동일하여야 하나,
- 아래 표와 같이 위원별로 다르게 평가
<table><tr><td>구분</td><td>위원 1</td><td>위원 2</td><td>위원 3</td><td>위원 4</td><td>위원 5</td></tr><tr><td>점수</td><td>7</td><td>10</td><td>10</td><td>8</td><td>10</td></tr></table><처분내용>
○ 용역계약 체결할 경우 관련 규정에 적합하도록 수행실적 등을 평가 필요</td><td>종묘</td></tr>
<tr><td>16</td><td>모범
사례</td><td><사업내용>
□ 창덕궁 고건물 창호 개방을 통한 관람 만족도 제고
○ 창덕궁관리소는 “창덕궁 고건물 창호 개방, 채광들이기”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(2022. 3. 22. ~ 2022. 3. 24.)
- 고건물의 창과 문을 개방하여 내부에 자연 채광 및 통풍을 시켜, 곰팡이 등을 사전 예방하여 고건물의 수명을 늘림
- 관람객들에게 내부를 볼 수 있게 하였고, 창호를 통해 궁궐의 바깥 풍경을 바라보는 등 색다른 관람 기회 제공
- “창호 개방” 대상인 궐내각사, 희정당·대조전, 낙선재 권역에 권역별 1일 4회 해설 제공</td><td>창덕궁

*연말 자체 종합감사 우수사례 표창 후보에 포함</td></tr>
</table>

연번	처분 종류	지적 및 처분내용	해당 기관
		<평가내용> ○ 창호 개방 행사운영으로 **관람인원 현저한 증가**, 특히 SNS 이용자들의 이미지 올리기 효과에 따른 **20대 관람객 층 증가 효과**, 지속가능한 문화유산 관리 및 활용 프로그램으로 **궁궐의 가치를 재조명 하는 등 모범**이 됨	
17	**모범 사례**	<사업내용> □ **코로나 19 의료진 초청 문화유산 힐링 프로그램 운영** ○ 인근 지역사회와의 교류협력을 통해 **코로나 19 의료진에게 문화유산 힐링 프로그램**(2022. 4. 11. ~ 4. 25.) 운영 - ○○**보건소 의료진 등 55명**(자원봉사자 11명, 의료진 및 대응 인력 44명)이 참여, (사)●●연구소와 협업을 통해 창경궁 고건물 관람, 창경궁 숲길에서 명상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 <평가내용> ○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한 지역사회 의료진을 위로하는 프로그램 운영으로 **치유 시간 제공**, 펜데믹(Pandemic) 위기 극복을 위한 문화유산의 **사회적 역할 확대에도 기여**하여 **궁궐의 가치를 재조명 하는 등 모범**이 됨	창경궁 *연말 자체 종합감사 우수사례 표창 후보에 포함